

사랑과 존중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전주우전중학교  
**학생생활안전규정**

전주우전중학교

#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2장. 학생생활 .....	1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11
제4장. 학생생활교육 .....	11
제5장. 규정의 개정 .....	16
부칙 .....	17

## <부록자료>

1. 전주우전중학교 징계기준 .....	18
2. 교복착용규정 .....	20
3. 휴대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 .....	22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전주우전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 문화 형성과 더불어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 (규정의 적용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모든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⑨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 (학교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② 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학생의 보호자 등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생고충상담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여성가족부 청소년전화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7. 학교폭력근절 117

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⑥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인성인권부(상담)에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출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제12조 (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제13조 (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등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 한다.

-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④ 일과 중 학급 내 봉사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 제14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제15조 (이성교제) ① 학생들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②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계발활동,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자치회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회에 동아리 활동을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자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⑥ 학교(학생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 및 예산을 지원한다.

**제17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의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강당,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8조 (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복

1. 교복의 제작에 관련한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은 본교의 교복착용규정에 따른다.

2. 학생은 등·하교 시 교복, 체육복, 생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여학생은 치마, 바지, 반바지 중에 선택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4. 계절의 변화에 따른 간절기나 이상기온 발생 시 융통성 있게 혼착 할 수 있다.

② 두발

1. 머리 형태는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한다. 단,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퍼머, 염색 등은 삼간다.

2. 실내에서 수업 중, 교과활동 중에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 상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착용할 수 있다.

③ 신발은 교내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를 착용한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정해진 구역 밖을 벗어나는 경우 실내화를 신지 않는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9조 (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

**제20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존중한다.

**제21조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급 조회 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 돌려준다.

② 일과 중 부득이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 후 반납해야 한다.

③ 1, 2항을 위반할 시 담임교사나 해당교사가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 1회 위반 시 3일 압수, 2회 이상 위반 시 5일 이상 압수한다.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2.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 (교외활동)**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여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술, 담배(전자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25조 (교외 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 활동을 전개한다.

**제2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3절 학급자치회{신설}

**제27조 (명칭)** 전주우전중학교 00학급 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한다.

**제28조 (회원)** ① 해당 학급의 학생 구성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급회의 회원은 학급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역할)** ①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학생 자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③ 학급 규칙 등의 제정

**제30조 (학급회 임원)** ① 학급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은 학급회를 대표하며, 학생대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학급 자체적으로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부서)** 학급회의 부서는 제42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학생자치회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학급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투표는 학급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학기 학기 초(1학기 말)에 실시한다.

**제33조 (학급회의의 운영)** ① 학급자치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자치회나 담임 교사의 요구가 있을 시 학급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학급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4조 (학생 자치회 관련 규정 준용)** 기타 학급 자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4절 학생 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학생자치회**

**제35조 (명칭)** 전주우전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36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7조 (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9조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 운영위 상정(할) 학생 인권·복지·생활에 관한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의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40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제41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학교활동 계획, 서기,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예부(행사계획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행사진행부: 교내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 또래 상담 및 학생 간 갈등 중재에 관한 사항
5. 방송부: 교내 방송에 관한 사항

**제42조 (학생회 임원)** ①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2명(2,3학년 각 1명)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하 부.차장) 각 1명
- ②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43조 (임원의 자격요건)** 학생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 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2학년 각 학급 에서 1명 내외의 지원을 받아 이 중 본교의 학생회담당부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3~9명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 공고 후 부정사례가 없도록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46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47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별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8조 (학생회장단 입후보)** ①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으로 소정의 양식에 전교 학생회 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회장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불가하다.
  2.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현재 각각 2학년으로 소정의 양식에 해당 학년 학생회 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부회장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불가하다.
  3. 회장 및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 후보자 등록서, 후보자 본인승낙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후보자의 허위 또는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후보자를 확정하여 명단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9조 (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선출을 위한 투표는 회장은 전교 학생회 회원으로, 부회장은 해당 학생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투표가 끝나면 총 투표자수를 확인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개표 종사원에 의하여 개표한다.

③ 개표가 끝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④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임기는 선출 후 차기 학년도의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차기 학년도 이전에 인수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0조 (선거관리시행규칙)** 이 규정의 선거에 관련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의 인준 및 임명)**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의 임명동의안을 제52조의 학생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시작 첫 번째 학생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총무부의 경우 부장, 차장을 3학년으로 둔다.)

**제52조 (학생대의원회)**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각 학급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회의소집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③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결산 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5. 학생회 회칙 및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장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학년도는 재상정 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6.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 (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학생총회는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학생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4조 (학년총회 및 학년대의원회)** ① 학생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년총회와 학년대의원회를 열 수 있다.

②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③ 학년대의원회는 해당 학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 (집행위원회)** ① 학생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5. 기타 중요한 의안
-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6조 (예산편성 요구)**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7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자문)**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 (회칙 제·개정)** 회칙에 대한 제·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칙의 제·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의원회에 발의한다.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0조 (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6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부장, 학생자치안전부장, 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 해당 담임교사, 해당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위원회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각 학년 담임교사들로 구성된 학년위원회에서는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훈계 지도를 실시하고 훈계지도에 대한 시정이 없을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한다. (선도 대장) 별표2첨부

**제62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대한 사항 및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을 심의·의결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자치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63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회초리, 몽둥이, 출석부, 자 등)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6. 간접적인 체벌 (얼차려, 무릎 꿇기, 팔 들기, 옆드려 뺏치기, 의자 들기, 오리걸음 등)

**제64조 (안전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을 할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기존의 획일적인 지적 및 적발 위주의 등교지도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6.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65조 (진로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제66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 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성찰교육)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67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68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다음 사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학생을 격리조치할 수 있다.
1. 해당학생의 수업활동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방해 행위가 있을 때.
  2. 교사의 통상적 지도 방법으로는 갈등 상황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69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 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4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4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70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 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징계원칙)** 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 사안은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징계 시에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72조 (징계의 심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심의 전에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선도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의 요구)** ① 징계 대상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의에서는 제62조 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 (학생의 징계 결정)** ①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학생의 징계 결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반복된 잘못인가
2.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가
3. 의도성이 있는 행위인가
4. 잘못의 원인이 내적 기인인가 외적 기인인가
5. 초기 잘못에 대한 가정, 학교의 충분한 지도가 있었는가

**제75조 (징계의 종류)**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76조 (징계의 기준)** ①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동일행동을 반복하였을 시에는 상위 징계 조치를 내린다.

③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육 이수 후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자
2. 제1항의 징계 조치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 교사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불손한 언행, 모멸감을 준 행위,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한 행위
- ④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6조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7조 (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 제75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확정된 징계 대상 학생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 출석으로 처리

- 1) 인성인권부는 학년부 및 담임교사 등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의 계획(시기, 장소 등)을 세운 후 시행한다.
- 2)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누적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교정을 위하여 학교에 등교시켜 학교 봉사의 실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3) 출결과 이행여부는 인성인권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하며,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인성인권부가 지원한다.

2. 사회봉사 : 출석으로 처리

- 1) 인성인권부는 학년부 및 담임교사 등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의 계획(시기, 장소 등)을 세운 후 시행한다.
- 2) 사회 봉사활동은 태도상 문제가 다소 누적된 학생, 문제의 심도가 약간 깊은 학생으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 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2일 이내로 한다.(대상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조회와 종례를 받는다.)
- 3) 출결과 이행여부는 인성인권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인성인권부가 지원한다.
- 4) 사회봉사 기관의 선정은 인성인권부에서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성인권부에서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문서일체를 취합 관리한다.
- 5) 사회봉사는 보호자 동반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후 봉사활동 확인서와 일지를 인성인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교내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

- 1) 특별교육 이수는 생활 태도상 문제가 장기화 및 습관화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심도가 깊은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여 금연학교, 의료기관 및 교육 전문 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특별교육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특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인성인권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4) 출결과 이행여부는 인성인권부에서 관리하고,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인성인권부가 지원한다.
- 5) 그 정도의 누적도에 따라 교내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 1)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석정지 기간 수시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이행여부의 점검은 인성인권부에서, 학생 관리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에서, 전문상담이 필요시에는 진로상담부와 인성인권부가 지원한다.

제78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9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0조 (봉사활동의 해석) 제80조에 의한 봉사활동은 일반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1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완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제5장 규정의 개정

제82조 (규정[규칙]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규칙]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5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6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7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2021. 4.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1].

### 징계기준

구분	항	내용	징계				
			주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2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5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6	공공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	●	●
	7	교권침해를 했거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8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			
	9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	●			
	10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	●			
	11	우발적 장난으로 상대학생을 다치게 하는 학생	●	●			
	1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3	경찰서에서 구속 석방된 학생			●	●	
	14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6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수업	17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21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22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3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24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를 한 학생	●	●			
	25	무단 결석,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26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7	동 학기중 무단 결석 기간이 수업 일수 1/3을 초과한 학생			●	●	●
약물	28	교내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29	교내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3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31	일과 중 음주 또는 음주 난동한 학생		●	●	●	●

구분	항	내 용	정 계				
			주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b>퇴폐 행위</b>	32	도박을 한 학생	●	●			
	33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34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5	불량 서적(음란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	
	36	음란 비디오.음란디스켓을 소지.시청한 학생		●	●	●	
	37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8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b>금품</b>	39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40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41	<b>금품(물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b>		●	●	●	●
<b>집단</b>	42	<b>금품(물품)을 강취한 학생</b>		●	●	●	●
	43	불법 집회.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44	허가 없이 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4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	●	●	●		
	46	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47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48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b>기타</b>	49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50	. 사안 발생으로 자치위원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동일 학년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는 가중 처벌한다.					
	51	. 학교폭력 사안을 제외한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부록2]

<교복착용규정>

본교 재학생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소재는 다를 수 있다.

(개정 2011.4.28 )(개정 2013.4)

<표1> 여학생

종류		소재	색상	비고
하복	상의	레이온 35% 폴리에스테르 65%	백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칼라 : 테두리는 녹색 흰색 체크무늬 좁은띠, 안쪽은 녹색 흰색 체크무늬 넓은띠</li> </ul>
	하의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윗주머니 : 왼쪽 가슴 1개 부착(윗부분 녹색 흰색 체크무늬 띠, 가운데 학교마크)</li> <li>▷소매 : 소매 끝 녹색 흰색 체크무늬 띠</li> <li>▷단추 : 단추 3개</li> <li>▷하의 : 앞면에 양쪽으로 외주름 1개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 무릎 아래로 내려오게</li> <li>- 통 : 엉덩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하게</li> </ul> </li> </ul> <p>※소재는 기본 모델로 다른 소재 선택도 가능함</p>
동복	재킷	울 80% 폴리에스테르 20%	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킷 및 조끼 위, 아래 주머니 : 부착형 학고</li> </ul>
	조끼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빨간색 다단 체크 줄무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킷 단추 : 왕관단추 2개</li> <li>▷조끼 단추 : 왕관 단추 3개</li> <li>▷소매 : 끝부분 뒤쪽 왕관 단추 2개씩 부착</li> <li>▷하의 : 앞면에 양쪽으로 외주름 1개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 무릎 아래로 내려오게</li> <li>- 통 : 엉덩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하게</li> </ul> </li> </ul> <p>※소재는 기본 모델로 다른 소재 선택도 가능함</p>
	하의			
	블라우스	모슬린	백색	

<표1> 남학생

종류		소재	색상	비고
하복	상의	폴리에스터 100%(콜맥스) 생활복	미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라 : 테두리는 녹색 흰색 체크무늬 좁은띠, 안쪽은 녹색 흰색 체크무늬 넓은띠</li> <li>▷ 윗주머니 : 왼쪽 가슴 1개 부착(윗부분 녹색 흰색 체크무늬 띠, 가운데 학교마크)</li> <li>▷ 소매 : 소매 끝 녹색 흰색 체크무늬 띠</li> <li>▷ 단추 : 단추 3개</li> <li>▷ 하의 : 일자형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 발목 아래로 내려오게</li> <li>- 통 : 엉덩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하게</li> </ul> </li> </ul> <p>※ 소재는 기본 모델로 다른 소재 선택도 가능함</p>
	하의	쿨 포라	감색	
동복	재킷	울 80% 캐시미어 20%	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킷 주머니 : 위 - 부착형 학고 아래 - 아웃 포켓</li> </ul>
	하의	울 60% 폴리에스테르 37% 우레탄 3%	진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킷 단추 : 쌍사자 단추 3개</li> <li>▷ 넥타이 : 감색</li> <li>▷ 소매 : 끝부분 뒤쪽 단추 2개씩 부착</li> <li>▷ 하의 : 일자형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 발목 아래로 내려오게</li> <li>- 통 : 엉덩이에 달라붙지 않도록 넉넉하게</li> </ul> </li> </ul> <p>※ 소재는 기본 모델로 다른 소재 선택도 가능함</p>
	와이셔츠	모슬린	하늘색 세로 줄무늬	

[부록3]

## 휴대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

학번 :

성명 :

상기 학생은 전주우전중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 21조 1항에 따라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수거에 동의합니다.

21조 1항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는 학급조회 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에 돌려준다.

- 휴대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교육활동 시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1회: 3일 압수, 2회 이상: 5일 이상의 압수 기간을 둔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학부모 : (인)

학생 : (인)

년 월 일

전주우전중학교장 귀하